## 교육혁신위원회규정

(폐지 : 2021.06.0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교육에 관한 종합적 발전계획 및 혁신방안을 다루기 위한 교육혁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혁신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대학의 교육목표를 반영한 교육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교육과정(전공, 교양, 비교과) 전반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
- 5. 교육과정(전공, 교양, 비교과)의 평가모형 설계 및 환류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대학의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, 부위원장은 교육혁신실장으로 한다.
- ③ 교육혁신본부장, 교육혁신원장, LINC+사업단장, SW중심사업단장, 교육과정혁신센터장, 학생역량관리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진로개발센터장, 학생상담센터장, 학부교양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9.4.30.), (개정 2020.1.14.,2020.3.1.)
- ④ 삭제(2020.1.14.)
- ⑤ 위원회는 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수요자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18.12.12.)
- ⑥ 원활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(개정 2018.12.12.), (개정 2020.1.14.)
- 제4조(임기)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결원 이 생기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명시하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삭제(2020.1.14.)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.(개정 2020.1.14.)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폐지한다.